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98호 2025. 1. 16.(목)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_\_\_\_\_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_\_\_\_\_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2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0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제4조 전문개정을 통해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서류를 명시(안 제4조)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2, 팩스 560-2710, 이메일 suker8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제4조 전문개정을 통해 위원추천운영위원회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서류를 명시(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확인) 동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례 제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중 “제8조제7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제8조제7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동 공고 제 호

##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직원 : )

3. 모집인원: ○○명

4. 자격요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다.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7. 선정방법: 동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또는 개별 심사

8. 결과통보: 개별 통보 및 공고

9. 문의사항: ○○동 행정복지센터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단 최초 구성 시에는 동장이 구성한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장 추천 2명 이내</li> <li>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li> </ol> <p>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p> <p>④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위원의 자격 확인) 동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례 제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li> <li>2.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li>3.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6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p>	<p>제6조(인적사항 공개) -- 제8조제8항</p> <p>-----</p> <p>-----</p>

시 서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주민 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 1. (생략)
- 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 사항 공고

제12조(권역별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 5. (생략)

제21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7. (생략)
- ②·③ (생략)

-----  
-----  
-----.

제10조(권한의 위임) -----  
-----  
-----.

- 1. (현행과 같음)
- 2. --- 제8조제8항-----  
-----

제12조(권역별 운영) 자치센터-----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 제29조제1항-----  
-----  
-----  
-----  
-----  
-----.

- 1. ~ 7.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1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황 및 현행 보수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무국장 반영(안 제10조, 안 제18조, 안 제19조제2항)
- 나. 폐지된 수당 삭제(안 제19조제4항)
- 다. 사무국장·팀장·운영요원 임용 선발자격기준 신설·수정(별표 2)
- 라. 센터 직원의 호봉 산입표를 경력 단서조항 삭제(별표 3)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5, 팩스 560-2710, 이메일 hamsr2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황 및 현행 보수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무국장 반영(안 제10조, 안 제18조, 안 제19조제2항)
- 나. 폐지된 수당 삭제(안 제19조제4항)
- 다. 사무국장·팀장·운영요원 임용 선발자격기준 신설·수정(별표 2)
- 라. 센터 직원의 호봉 산입표 을 경력 단서조항 삭제(별표 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팀장, 서기는 교육운영팀장”을 “사무국장, 서기는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센터장”을 “센터장,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사무국장,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팀장은 별정직 6급 상당 또는 7급 상당”을 “사무국장은 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별정직 7급 상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을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원 임용 선발자격기준(제18조의2 관련)

구분	선발시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센터장	서류 전형	면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li> <li>○ 자원봉사 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li> <li>○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li> </ul>
사무국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li> <li>○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li> <li>○ 6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li> <li>○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7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li> </ul>
팀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li> <li>○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li> <li>○ 7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li> <li>○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8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li> </ul>
운영 요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자원봉사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li> <li>○ 9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li> <li>○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li> <li>○ 8급 상당 운영요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9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li> </ul>

센터 직원의 호봉 산입표(제19조제3항)

구분	경 력 산 입 내 용
<p>갑 경력 (10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li> <li>- 군 복무 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li> <li>- 시 및 군·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li> </ul>
<p>을 경력 (8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근무 경력</li> <li>-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li> </ul>
<p>병 경력 (5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li> </ul>

※ 군복무 경력 및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u>기획조정팀장</u>, 서기는 <u>교육운영팀장</u>이 된다.</p>	<p>제10조(간사) ----- ----- - <u>사무국장</u>, 서기는 <u>기획조정팀장</u>-----.</p>
<p>제18조(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u>센터장</u>, <u>팀장</u>, <u>운영요원</u>으로 구분한다.</p> <p>②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u>팀장</u>, <u>운영요원</u>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p> <p>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임용된 <u>팀장</u>, <u>운영요원</u>에 대하여는 1년에 2회(상, 하반기)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하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제18조(직원의 임용 등) ① ----- ----- <u>센터장</u>, <u>사무국장</u>-----.</p> <p>② ----- --- <u>사무국장</u>, <u>팀장</u>----- ----- -----.</p> <p>③ ----- <u>사무국장</u>, <u>팀장</u>-----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보수지급) ① (생략)</p> <p>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u>팀장은 별정직 6급 상당 또는 7급 상당</u>, <u>운영요원은 별정직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u>으로 하고</p>	<p>제19조(보수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사무국장은 별정직 6급 상당</u>, <u>팀장은 별정직 7급 상당</u> ----- -----</p>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 등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

-----

-----

-----.

⑤ (현행과 같음)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3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2. 개정이유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구매목표 비율 근거 및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비율을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구매목표액”을 “구매목표비율”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비율을 1%에서 1.1%로 변경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 전화 032-560-4311, 팩스 032-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가 개정됨에 따라 구매목표 비율 근거 및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비율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구매목표액” 을 “구매목표비율” 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1%에서 1.1%로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제2항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액” 을  
“구매목표 비율” 로 변경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를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